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0.12.1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해 용]

<의안번호 제2020 - 118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1.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2. 1.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

3. 2021년도 기금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나. 운용방침

-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임.
- 자금 운용체계를 총괄부서와 운영부서로 이원화하여 책임성·투명성 확보
 - 총괄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운용부서 : 각 기금관리운용 관·과·소
-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4.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2020년도 말 조성액 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④=①+②-③	증 감 ⑤=④-①
		수입②	지출③		
합계	164,163,423	13,015,937	40,799,526	136,379,834	△27,783,589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52,560,000	12,720,480	40,000,000	125,280,480	△27,279,520
중소기업 육성기금	6,400,311	87,345	600,000	5,887,656	△512,655
식품진흥 기금	145,502	72,656	71,776	146,382	880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500,565	4,004	4,000	500,569	4
사회복지 기금	3,475,878	116,744	103,750	3,488,872	12,994
체육진흥 기금	1,081,167	14,708	20,000	1,075,875	△5,292

5. 검토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담당관>[p2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회계 간 예수·예탁을 통한 지방재원의 효율적 운용하고자 2020년 신설하였고,
 -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정안정화계정)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군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통합계정)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예탁·예수하여 통합적으로 재원 활용하고자 함
 -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 다른회계의 전입금과 수익금, (통합계정은) 다른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자금, 이자수입, 수익금임
 - 2021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조성금액의 예수금 115억원이 증액된 1,652억 8,048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은 군의 세입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간 해당 금액의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채무부담 사업비이며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임
- ※ 다만,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50%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성과분석 결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강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됨

▣ 중소기업육성기금<미래전략과>[p33]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따라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기금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 재원으로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이루어짐.
-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677만 9천원이 감액된 64억 8,765만 6천원으로 편성
- 총 예산 64억 8,765만 6천원 중 예치금 회수 예산이 64억 31만 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98.65%로 실질적인 수입은 이자수입 8,734만 5천원임.
- 내년도 기금 목적사업에 이자수입의 지속된 감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식품진흥기금<민원소통과>[p35]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기금사업의 목표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주요 사업은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체 추진(홍보), 우수(모범 음식점 등)업소에 대한 지원, 음식물 위생등급제 및 식중독 예방 홍보 등이며,
-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구성됨.
-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08만원이 증액된 2억 1,815만 8천원으로 편성
- 총 예산 2억 1,815만 8천원 중 예치금 회수 1억 4,550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66.69%이며, 실질적인 수입은 보조금 6,135만 6천원, 이자수입 130만원, 기타수입 1,000만원으로 총 7,265만 6천원으로
- 기금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재원조성이 너무 열악한 실정임.

- 2021년도 세출 총 예산은 2억 1,815만 8천원 중 예치금이 1억 4,638만 2천원으로 67.10%로 순수 목적사업은 도비 보조금 6,135만 6천원 편성되어 기금이 경직되어 있음.
-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입 증액이 우선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방안 강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됨

▣ 아림예술제진흥기금<문화관광과>[p47]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아림예술제위원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기금사업의 목표는 60여 년 동안 문화예술을 통한 군민 화합을 위해 개최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거창 아림예술제 진흥에 기여하고, 거창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 제50회 아림예술제 기록, 그 밖의 아림예술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에 있음.
-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군 출연금 또는 적립 기금, 군 외의 자의 출연금, 아림예술제 행사 잉여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93만 6천원이 감액된 5억 456만 9천원으로 편성
- 총 예산 5억 456만 9천원 중 예치금 회수 예산이 5억 56만 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99.20%로 실질적인 수입은 이자수입 400만 4천원으로 0.78%에 불과함.

- 2021년도 기금 목적사업 ‘아름예술제 행사 등 지원’은 제50회 아름답예술제 행사의 목적이 기금에 적합 사업 여부를 검토한 후 부족 예산은 일반회계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사회복지기금<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p55]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저소득 주민의 창업자금과 자활기업 지원 등으로 자활자립 도모에 있음.
- 재원은 군 출연금, 기탁금, 기금운용 이자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구성하며
-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16만 7천원이 감액된 35억 9,262만 2천원으로 편성
- 총 예산 35억 9,262만 2천원 중 예치금회수와 용자금 회수 예산이 34억 8,593만 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97.03%로 실질적인 수입은 이자수입 4,669만 1천원, 기타수입 6,000만원으로 2.97%에 불과함.
- 기금사업의 예치금을 제외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기금사업 발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체육진흥기금<체육시설사업소>[p67]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기금사업의 목표는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지원임.
- 재원은 국가 및 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체육시설 임대 및 사용료 수입 등으로 구성하며
-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22만원이 감액된 10억 9,587만 5천원으로 편성
- 총 예산 10억 9,587만 5천원 중 예치금 회수 10억 8,116만 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98.66%로 실질적인 수입은 이자수입 1,470만 8천원으로 1.34%에 불과함.
- 2021년도 우수선수 육성사업 등 지원은 역도 등 유망종목 우수선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 총괄 검토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 2021년도 총 규모는 1,771억 7,936만원이며 수입은 130억 1,593만 7천원, 지출은 407억 9,952만 6천원임
- 매년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 실효성이 없는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하고
-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은 일몰제 적용을 폐지하고 혹 기금 목적사업의 성과가 높고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기금은 연장하여 존속하는 방안 강구해야 하며
- 동일한 사업이 일반회계와 기금사업에 산재해 있는 사업은 효율성이 높은 회계로 합쳐서 운용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함.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거창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기금
2.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기금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비·도비 보조금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군 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제5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이하 “노

인복지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지원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
3.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지원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지원
5.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노인 관련 단체로 한다.

제6조(양성평등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이하 “양성평등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 지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5.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6. 그 밖에 양성평등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양성평등 관련 단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지원은 제외한다.

제7조(자활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란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그 밖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거창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③ 자활계정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한도액

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장: 5천만원

나. 개인: 2천만원

2. 용자금 대부이율: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연 4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양성평등계정

3. 자활계정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의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9조(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노인 복지, 양성평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명

2.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3명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아립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아립예술제”란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립예술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② “아립예술제위원회(이하 “아립제위원회”라 한다)”란 아립예술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립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비·도비 보조금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군 외의 자의 출연금
4. 아립예술제 행사 잉여금
5.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아립예술제 행사
2. 그 밖의 아립예술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8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문화예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
5.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은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2. 우수선수 육성 사업
3. 군민체육대회 개최
4. 도민체육대회 참가
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액을 우선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체육시설 사업소장이 된다.(타조례 개정 2017.11.29)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관계자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포츠마케팅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기금의 집행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